

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4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2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9월 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환경부 <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>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용하여 무게를 제한하는 등 종량제봉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,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류 배출요령을 정비하여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제2호, 제4조제2항 및 제4항, 제9조제3항)
- 2) 50리터 이상의 일반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제한 규정 신설(안 제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)
- 3)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명칭 변경(안 제9조제1항제3호, 제14조제1항 및 제2항, 제18조제3항, 별표 2)
- 4) 특수규격봉투 구입처를 동주민센터, 판매소로 확대(안 제18조제3항)
- 5) 폐비닐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명시(안 별표 1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세부 규정과 폐비닐류 배출요령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폐기물 처리에 편리성을 높이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가)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제2호, 제4조제2항 및 제4항, 제9조제3항)

- 안 제2조에서 관련 법령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을 「물환경보전법」으로 변경
- 안 제4조제2항 :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11조제2항의 서울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개정함

나) 50리터 이상의 일반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제한 규정 신설(안 제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)

○ 무게 제한 규정

- 일반 종량제봉투 50리터: 장당 13킬로그램 이하
- 일반 종량제봉투 75리터: 장당 19킬로그램 이하
- 특수규격봉투: 장당 20킬로그램 이하

환경부 <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>

2.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

가.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(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)

○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작·판매하는 종량제 봉투,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

○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(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)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

※ (예시) 75L: 19kg 이하, 50L: 13kg 이하(폐기물 배출 밀도를 0.25kg/L 이하)

다)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명칭 변경(안 제9조 제1항제3호, 제14조제1항 및 제2항, 제18조제3항, 별표 2)

○ 환경부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 과 동일하게 용어를 수정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확보함

라) 특수규격봉투 구입처를 동주민센터, 판매소로 확대(안 제18조제3항)

마) 폐비닐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명시(안 별표 1)

3)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환경부 <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>을 준용하여 종량제 봉투 및 폐비닐류 배출요령 등을 정비하여 구민의 폐기물 처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「폐기물 관리법」 제14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